
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,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21조제2항 등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이 은 정)